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311
----------	-------

발의연월일 : 2025. 9. 26.

발 의 자 : 한민수 · 송옥주 · 이연희
임오경 · 박균택 · 박해철
이해식 · 최혁진 · 박상혁
김기표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방송·미디어 환경이 OTT 확산 등 글로벌 경쟁 환경으로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국내 방송 시장은 광고매출 등 수익이 감소하고 가입자수 감소가 가시화되는 등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음.

특히 유료방송은 글로벌OTT 등 신규 미디어의 시장 잠식에 대응하여 다양한 생존 전략 모색이 시급한 상황이나, 과거 유료방송이 성장·전성기이던 시기에 국내 시장의 경쟁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현행법은 여전히 유료방송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유지하고 있어 유료방송의 자율적인 사업 운영을 제약하고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음.

이에, 유료방송의 위기 타개와 시장의 활력 제고를 위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의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는 바, 일간신문의 유료방송에 대한 소유 규제와 유료방송 시장 내 가입자수 점유율 규제를 폐지하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의 소유 규제를 완화하여 유료

방송시장의 자율성을 높이고 투자 촉진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일간신문·뉴스통신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지분소유 제한(100분의 49 초과 금지) 규정을 폐지함(제8조제5항 삭제).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유료방송 전체 가입자수 점유율 규제(3분의 1 초과 금지) 및 가입자수 산정·검증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방송시장의 신뢰성 있는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유료방송사업자의 가입자수, 홈쇼핑 판매총액, 시청 데이터 등 자료 제출 및 검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제8조제16항부터 제19항까지 삭제, 안 제98조의3 신설).

다. 외국인이 공익성심사를 통과할 경우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자는 제외)의 주식을 49% 초과하여 소유할 수 있도록 정하고, 공익성심사를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심사 절차, 심사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신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및 제9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3항제1호가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제9항”을 “제8항”으로, “제14조제6항제2호”를 “제14조제7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제9항”을 “제8항”으로, “제14조제6항제2호”를 “제14조제7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16항부터 제19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의 경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4조의2에 따른 공익성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의 경우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간(兩者間) 또는 다자간(多者間)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제1항제3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같은 호에 해당하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취득 등에 관한 공익성심사)

①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으로 또는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다른 자와 공동으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경우, 국민의 시청권 보장, 국민 문화 향상, 방송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방송 및 영상산업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지의 여부를 심사(이하 “공익성심사”라 한다)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공익성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방송채널사용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 또는 등록·신고를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주는 제1항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주는 공익성심사를 받을 때까지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발행한 주식의 100분의 49를 초과 소유한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또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주는 제1항의 경우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실이 발생하기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에게 공익성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제3항에 따른 심사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공익성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⑤ 공익성심사위원회는 공익성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들을 공익성심사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익성심사의 결과에 따라 제1항의 경우가 공공의 이익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계약 내용의 변경 및 그 실행의 중지 또는 해당 주식의 매각을 명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공익성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 및 공익성심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3 (이행강제금)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4조의2제6항에 따른 명령(이하 이 조에서 “시정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후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루당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은 그 소유한 주식 매입가액의 1천분의 3 이내로 하되, 주식 소유와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인 경우에는 1억원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 기간은 시정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날까지로 한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정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내야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미납한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100분의 6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내야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이행강제금 및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⑤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제1항제1호 중 “제14조제6항제1호”를 “제14조제7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4조제6항제2호”를 “제14조제7항제2호”로 한다.

제83조제1항제1호 중 “제14조제6항제1호”를 “제14조제7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4조제6항제2호”를 “제14조제7항제2호”로 한다.

제9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8조의3 (유료방송 자료의 신뢰 확보)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시장(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포함한다)의 신뢰성 있는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유료방송 가입자수, 홈쇼핑 판매총액, 시청 데이터 등의 자료 제출을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제출받은 자료를 검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범위, 검증의 조건,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6조제1항제3호 중 “제14조제6항”을 “제14조제7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소유제한 등) ① ~ ④ (생략)	제8조(소유제한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각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u>	<u><삭 제></u>
⑥ ~ ⑧ (생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u>⑨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시장 점유율 또는 사업자수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u>	<u><삭 제></u>
⑩ ~ ⑫ (생략)	⑩ ~ ⑫ (현행과 같음)
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⑬ ----- ----- ----- -----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
<u>가. 제5항을 위반한 자</u>	<u><삭 제></u>

나.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제14조
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방
송사업자 외의 방송사업자
와 전송망사업자로 한정 한
다)

2. 방송통신위원회

가. (생 략)

나.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제14조
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방
송사업자로 한정 한다)

⑭ · ⑮ (생 략)

⑯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해당 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 다
음 각 호의 방송사업자를 합산
하여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포함한 전체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3분
의 1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없다.

1. 종합유선방송사업자

2. 위성방송사업자

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

나. ----- 제8항-----
----- 제14조
제7항제2호-----

2. -----

가. (현행과 같음)

나. ----- 제8항-----
----- 제14조
제7항제2호-----

⑭ · ⑮ (현행과 같음)

<삭 제>

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
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⑰ 특정 위성방송사업자는 해당
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 다음 각
호의 방송사업자를 합산하여 종
합유선방송, 위성방송, 「인터
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
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
디어 방송을 포함한 전체 유료
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3분의 1
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1. 종합유선방송사업자
2. 위성방송사업자
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
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
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도서산간 등 위성방송 수신만
가능한 지역은 제16항 및 제17
항에 따른 가입자 수 산정에서
배제할 수 있는 예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⑲ 제16항 및 제17항에 따른 가
입자 수의 산정 및 검증 등에

<삭 제>

<삭 제>

<삭 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

①·② (생략)

③ 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 전송망사업자는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의 경우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간(兩者間) 또는 다자간(多者間)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제1항제3호의 요건을 갖춘

제14조(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다만,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의 경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4조의2에 따른 공익성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경우에도 같은 호에 해당하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

<신 설>

④ ~ ⑥ (생 략)

<신 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방송채
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이나 보
도에 관한 전문편성 또는 상품
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의 경우 대
한민국이 외국과 양자간(兩者
間) 또는 다자간(多者間)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의 정부나 단체 또
는 외국인이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제1항제3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같
은 호에 해당하는 자로 보지 아
니한다.

⑤ ~ ⑦ (현행 제4항부터 제6
항까지와 같음)

제14조의2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의 주식 취득 등에 관한 공익성
심사) ①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으로 또는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다른
자와 공동으로 방송채널사용사

업자(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경우, 국민의 시청권 보장, 국민 문화 향상, 방송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방송 및 영상산업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지의 여부를 심사(이하 “공익성심사”라 한다)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공익성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방송채널사용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 또는 등록·신고를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주는 제1항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주는 공익성심사를 받을 때까지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발행한 주식의 100분의 49를 초과 소유한 주식에 대하여 의

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또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주는 제1항의 경우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실이 발생하기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공익성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제3항에 따른 심사 요청을 받으면 지체없이 이를 공익성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⑤ 공익성심사위원회는 공익성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들을 공익성심사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익성심사의 결과에 따라 제1항의 경우가 공공의 이익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계약 내용의 변경 및 그 실행의

<신 설>

중지 또는 해당 주식의 매각을
명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공익성심사위
원회의 구성·운영,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 및 공익성심
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3 (이행강제금) ①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4조
의2제6항에 따른 명령(이하 이
조에서 “시정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후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
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루당 부
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은 그
소유한 주식 매입가액의 1천분
의 3 이내로 하되, 주식 소유와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인 경우에
는 1억원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 기간은 시정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날
까지로 한다. 이 경우 이행강제
금의 부과는 특별한 사유가 있

제15조의2(최다액출자자 등 변경 승인 등) ①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정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미납한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100분의 6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이행강제금 및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⑤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최다액출자자 등 변경 승인 등) ①-----
--	---

This image shows a full page of handwriting practice paper. It features multiple sets of horizontal dashed lines spaced evenly down the page, providing a guide for letter height and placement. The background is white, and the lines are light gray. There are no other markings or text on the page.

1. 제14조 제7항 제1호-----

2. 제14조 제7항 제2호-----

는 방송사업자의 최다액 출자자가 되려는 자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자: 방송통신위원회	----- ----- ----- -----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83조(방송내용의 기록·보존)	제83조(방송내용의 기록·보존)
①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일지에 방송내용(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를 포함한다)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방송 실시결과를 방송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 ----- ----- ----- ----- ----- ----- ----- ----- -----
1. <u>제14조제6항제1호</u>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u>제14조제7항제1호</u>----- ----- ----- ----- -----
2. <u>제14조제6항제2호</u>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 방송통신위원회	2. <u>제14조제7항제2호</u>-----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10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 (생략) 3. 제14조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4. ~ 6. (생략) ② (생략)	제98조의3 (유료방송 자료의 신뢰 확보)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시장(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포함한다)의 신뢰성 있는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유료방송 가입자수, 홈쇼핑 판매총액, 시청 데이터 등의 자료 제출을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제출받은 자료를 검증할 수 있다. 제106조(벌칙) ①----- ----- ----- -----. 1. 2. (현행과 같음) 3. 제14조제7항----- ----- 4.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